

# 2025년 「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」 사업 3차 기업지원 연장 공고

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「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」 사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,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6월 1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 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 
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

## 1 지원개요

- **지원규모:** 기업당 3개 프로그램 내 지원(기 선정된 프로그램 포함)
- **지원목적:**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\*를 활용한 차세대 뷰티 제품 제조 기업의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 진출 촉진  
\* 세포유래, 펩타이드, 국내 자생 천연물 소재,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이를 통한 유기합성, 생합성 반응 생성물 소재  
(국내 개발 또는 국산화가 완료된 소재를 대상으로 함)
- **신청자격:**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 보유 기업 및 이를 활용한 제품의 제품화 및 양산화를 통해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전국 소재 영리기업

### [대상 소재 범위]

- 국내 연구·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
-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소재에 대한 국산화 완료 소재

### [제품화 및 양산화 대상 제품]

-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별 타겟 특화 기능성 화장품
- 바이오융합화장품<sup>1)</sup>, 코스메슈티컬<sup>2)</sup> 등 차세대 화장품 및 기능성 뷰티 제품
- 뷰티디바이스 전용 기능성 제품<sup>3)</sup> 및 융합기술 적용 제품
- 반려동물용 기능성 화장품 또는 이미용 뷰티 제품

1) 줄기세포, 엑소솜, 천연방부제, 항생제대체천연물질, 바이오 색소 등 바이오융합 소재 활용 화장품

2) 미용(cosmetic)과 치료(pharmaceutical)의 합성어로 의약품과 유사한 이점을 갖는 화장품 및 기타 제품

3) 미용 및 헬스케어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사용용 미용기기 전용 화장품 및 응용제품

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국내 소재지가 과세납부 사업장이어야 함

※※ 공정거래법상 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」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

□ **지원기간:** 협약일~2025. 12. 31.

□ **지원방법**

○ **지원금액**

- 지원내역별 총 금액의 80%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
\* 지원금,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산출

- 지원 프로그램별(6백만원~10백만원 내외)

○ **지원형태**

- 지원기관 직접지원을 통한 소재화·제품화·양산화 지원

- 용역업체를 통한 마케팅 지원

**2 지원내용**

□ **지원내역(기업당 3개 프로그램 지원 가능) ※기 선정된 프로그램 포함**

지원분야		지원프로그램	지원업체 수
①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	2. 소재 대량생산 지원	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	1개사
②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	4.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제품특성에 맞는 제형 관련 기술 지원 및 샘플제작 지원	1개사
③ 바이오 소재 제품 시장 진출 지원	7. 마케팅 지원	①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유통 및 광고 채널 확보 지원	4개사
		②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투자 역량 강화 지원	3개사

□ 상세내용

(1) 바이오 소재 산업화 기술 지원

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지원기관	지원금액	기업부담
소재 대량생산 공정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첨단 바이오 소재 대량 및 안정화 제형 생산 공정 지원</li> <li>- 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 공정 설계 지원</li> <li>- 유기용매 추출공정, 발효공정, 안정화공정, 분말화공정 등</li> <li>- 국내외 거래처 납품을 위한 효능 소재 시 생산 지원</li> </ul>	(재)강릉과학 산업진흥원	기업당 1,000만원 이내 (1개사)	총소요금액의 20% 이상

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국내 연구·개발이 완료된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바이오 원료이어야 함
  - 바이오 소재 산업화 지원프로그램은 지원기관에서 직접 수행
  -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80%만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- (예) 총 소요금액 1,250만원 = 지원금 1,000만원(80%) + 자부담금 250만원(20%)
- \*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산출

## [2] 바이오 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

지원프로그램 프로그램명	세부내용	지원기관	지원금액	기업부담
제품화 샘플제작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품화 샘플제작 지원</li> <li>- 용기선정에 따른 제품 용기 반응 테스트</li> <li>- 개발제품 반제품 직접생산(레시피 제공에 따른 제주TP생산) 또는 위탁생산(지원 종료 후 지정된 제조원의 생산업체)</li> <li>- 개발제품(샘플)의 원부자재 입고에 따른 완제품 생산지원</li> <li>- 완제품생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및 생산 관련 서류제공</li> </ul>	(재)제주 테크노파크	기업당 600만원 이내 (1개사)	총소요금액의 20% 이상

### 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제품화·양산화 이후 판매용 제품 생산은 기업 자부담
  - 샘플제작 지원의 경우 제주테크노파크 직접 수행
  - 샘플제작 지원은 판매용이 아닌 홍보용 제품으로 제작 지원
  -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80%만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- (예) 총 소요금액 750만원 = 지원금 600만원(80%) + 자부담 150만원(20%)
- \*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산출

### (3) 바이오 소재 제품 시장 진출 지원

지원프로그램		세부내용	지원기관	지원금액	기업부담															
프로그램명																				
마케팅지원	유통 및 광고채널 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첨단 바이오 소재 기업 유통 및 광고 채널 확보</li> <li>- 온/오프라인 유통 및 홍보 채널 확보, 개발 제품 마케팅 지원</li> <li>- B2B 거래 확대를 위한 유통 채널 입점 지원</li> </ul>	(재)강릉과학 산업진흥원	기업당 1,000만원 이내 (4개사)	총 소요금액의 20% 이상															
	투자역량 강화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자역량 강화 지원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연번</th> <th>분야</th> <th>세부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</td> <td>투자 컨설팅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투자용 기술평가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용 기술평가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3</td> <td>IR 디자인 고도화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IR 피칭덱 디자인 고도화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4</td> <td>IR 피칭 코칭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IR 피칭 방법 및 노하우 교육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5</td> <td>비즈니스 모델진단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비즈니스모델(BM) 진단 및 검증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                     * 지원금액은 최대 1,000만원 이내에서 분야별 복합지원 가능                      * 컨설팅 기관 견적서 제출 필수                      * 지원기업 향후 투자상담회 개최 필수 참여                 </p>		연번		분야	세부내용	1	투자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</li> </ul>	2	투자용 기술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용 기술평가</li> </ul>	3	IR 디자인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IR 피칭덱 디자인 고도화</li> </ul>	4	IR 피칭 코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IR 피칭 방법 및 노하우 교육</li> </ul>	5
연번	분야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
1	투자 컨설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투자유치 애로사항 해결 및 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2	투자용 기술평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용 기술평가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3	IR 디자인 고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IR 피칭덱 디자인 고도화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4	IR 피칭 코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IR 피칭 방법 및 노하우 교육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5	비즈니스 모델진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비즈니스모델(BM) 진단 및 검증</li> </ul>																		

#### ※ 신청시 유의사항

- 마케팅지원의 경우 용역업체 견적서, 사업자등록증 첨부 필수
- 지원금액은 총 소요금액의 80%만 지원, 신청기업 20% 자부담
- (예) 총 소요금액 1,250만원 = 지원금 1,000만원(80%) + 자부담금 250만원(20%)
- \* 지원금과 자부담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산출

###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#### 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2025. 6. 19.(목)~7. 8.(화) 18:00 (시간엄수)
- 신청방법: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접수처: o jy@gsipa.or.kr

※ 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신청 내역 확인 요청 메일 송부 예정. 확인 마감일까지 회신 또는 연락이 없는 경우, 누락된 신청 건이 없다고 판단 후 선정평가 진행하며, 이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지지 않음

- 문의처(지원프로그램 문의는 지원사업 안내서 내 문의처 확인)

접수처	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	
주소	강원도 강릉시 사임당로 641-22	
담당자	김광우 팀장	오지연 주임
연락처	033-650-3355 / gwkim@gsipa.or.kr	033-650-3375 / o jy@gsipa.or.kr

#### □ 제출서류

- 1) 사업계획서(신청서)(붙임 1. 참조)
- 2) 수혜기업 대표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(붙임 2. 참조)
- 3) 중복지원금지 협약서(붙임 3. 참조)
- 4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(붙임 4. 참조)
- 5) 사업자등록증 사본
- 6) 최근 2년간 재무제표(단,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
  - ※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해당사항 없음
- 7) 4대보험 가입자명부(신청일 기준)

#### □ 추진일정 (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

## □ 지원방법 및 기업부담금

### ○ 선정기업은 지원내역 총 소요금액의 20% 자부담 필수

- 수행기간 내, 지원과제 수행을 위한 직접 투입 기재에 대한 수혜기업 현금성 지출금액의 합계로 증빙(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등)

※ 생산 지원의 경우 원료(현물)로 가능하며, 외부용역의 경우 지원금액 총액의 현금 부담

- 지원내역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며, 지원금은 선정기업으로 직접 지급 불가

### ○ 사업비를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주관 및 참여기관이 기술지원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

- 선정 후 협약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지원기관의 직접 수행 지원

- 용역지원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통한 비용 지급

## □ 결과물 제출

### ○ 수행 내용에 따른 결과물 및 성과 관리 내용에 대하여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제출해야 함

### ○ 지원사업 종료 후 3년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제출한 자료는 본 사업의 실적 보고용으로만 활용됨

## 4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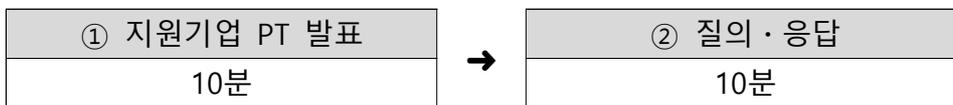
### □ 평가방법

- 서류심사(1차): 지원분야, 신청자격,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
- 발표심사(2차): 지원기업 온라인 PT 발표를 통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결과 70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

※ 온라인 발표심사로만 진행되며, ZOOM 링크는 평가 1일 전 메일로 공유 예정(메일 확인 필수)

※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서면평가로 진행(발표심사 개별 연락)

### □ 발표심사 절차: ① 지원기업 PT 발표 → ② 질의·응답



- **평가기준:** 적합성, 내용 및 범위, 필요성, 기업역량, 기대효과 등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위원 점수 합산
- **결과발표:**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선정결과는 개별 메일 통보

## 5 기타 유의사항

### 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중복으로 지원할 경우,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. 또한,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중도포기 시에도 향후 1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금액은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청기업의 추진내용 및 목적을 고려하여 신청내용 사전검토 후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기관 변경 가능
-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,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
- 성과 증빙자료는 성과 보고 용도로만 사용됨.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, 향후 지원사업에 제한될 수 있음
- 지원계획서 내 정성적·정량적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를 작성
-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문의를 통해 확인

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- 동일 내용으로 타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지원 분야 및 지원내용이 본 지원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접수 마감일 기준,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(보고서 제출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 제한을 받는 경우
  - ※ 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 포함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